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이해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jpark@pknu.ac.kr)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체계의 구조
- III.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
- IV. 생활화학제품 리스크평가·관리체계



I.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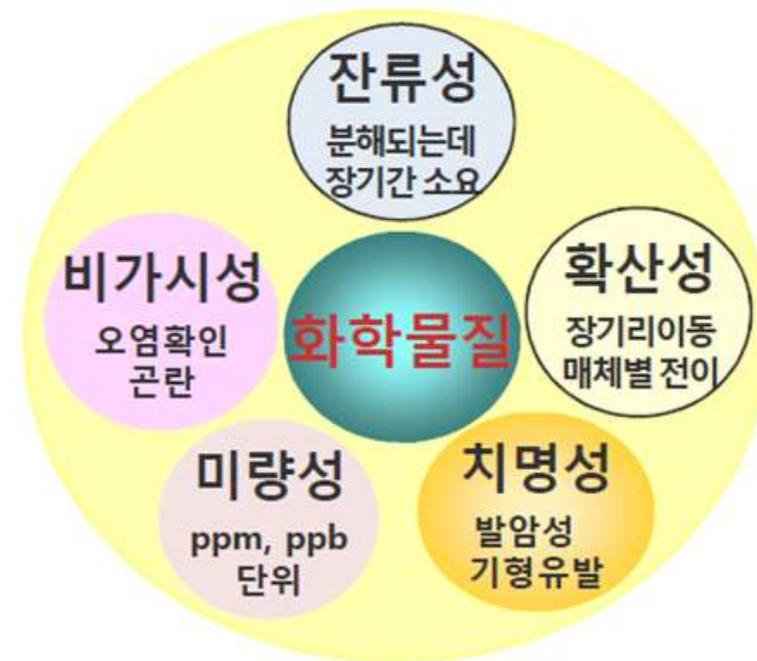


화학물질의 특성

유용성[有用性]



유해성[有害性]



화학물질은 현대문명에 필수적이거나, 심각한 환경피해 유발
사용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에방적 화학물질관리” 필요



유용하지만 유해한 화학물질 사례

DDT

- 1939년: P.H. 밀러, 살충제로 개발 [기적의 농약]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말라리아 구제용으로 사용
- 1948년: 밀러, 노벨상 수상
- 1962년: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발표
- 1973년: 미국, DDT 사용 금지



Paul Hermann Muller



Rachel Ca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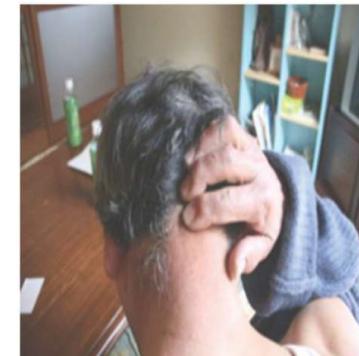
유용하지만 유해한 화학물질 사례

PCBs

- 1929년: 미국 Monsanto사에서 대량 생산 [변압기 절연유 등 사용]
- 1960년대 후반: 잔류성, 축적성, 발암성 확인
일본 카네미유증 사건 발생 [PCBs로 오염된 쌀겨기름 식용 사용]
- 1970년대: 미국 등 주요국에서 사용 금지
- 1999년: 벨기에, PCBs로 오염된 유지를 사용한 사료 공급 → 약 36조의 경제손실 발생
- 2004년: 스톡홀름 협약 발표



< PCBs로 인한 피해 (피부발진) >



< 카네미유증 사건으로 인한 피해 (피부발진, 탈모) >

[출처: Ahlborg et al., 1992.]



유용하지만 유해한 화학물질 사례

다이옥신

- 1964년~1970년: 베트남 전 국토의 18% 지역, 1,200만 겔런의 고엽제 살포
 - Agent Orange: 원료에 TCDD라는 강한 독성과 발암성의 다이옥신 성분 포함
 - 부작용: 유전자변화, 소모성질환(결핵, 암), 간 손상, 면역 억제, 골수억압 등
- 1979년: 미국, 호주 등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다우케미컬, 몬산토 등에 집단소송 제기
 - 1억 8천만불로 보상 합의
- 미공군 고엽제 투하병의 딸, 후세대 영향으로 팔의 선천성 기형 발생





Ⅱ.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구조



화학물질 관련 법령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거법령	관리목적
화학물질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건강장해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증진
농약·비료·사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향상과 수 급관리
의약품,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마약류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향상
식품첨가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화장품의 안전관리
위험물, 화약류	행정안전부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를 통한 공공안전 확보, 화약류 등으로 인 한 위험과 재해 방지
고압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이용과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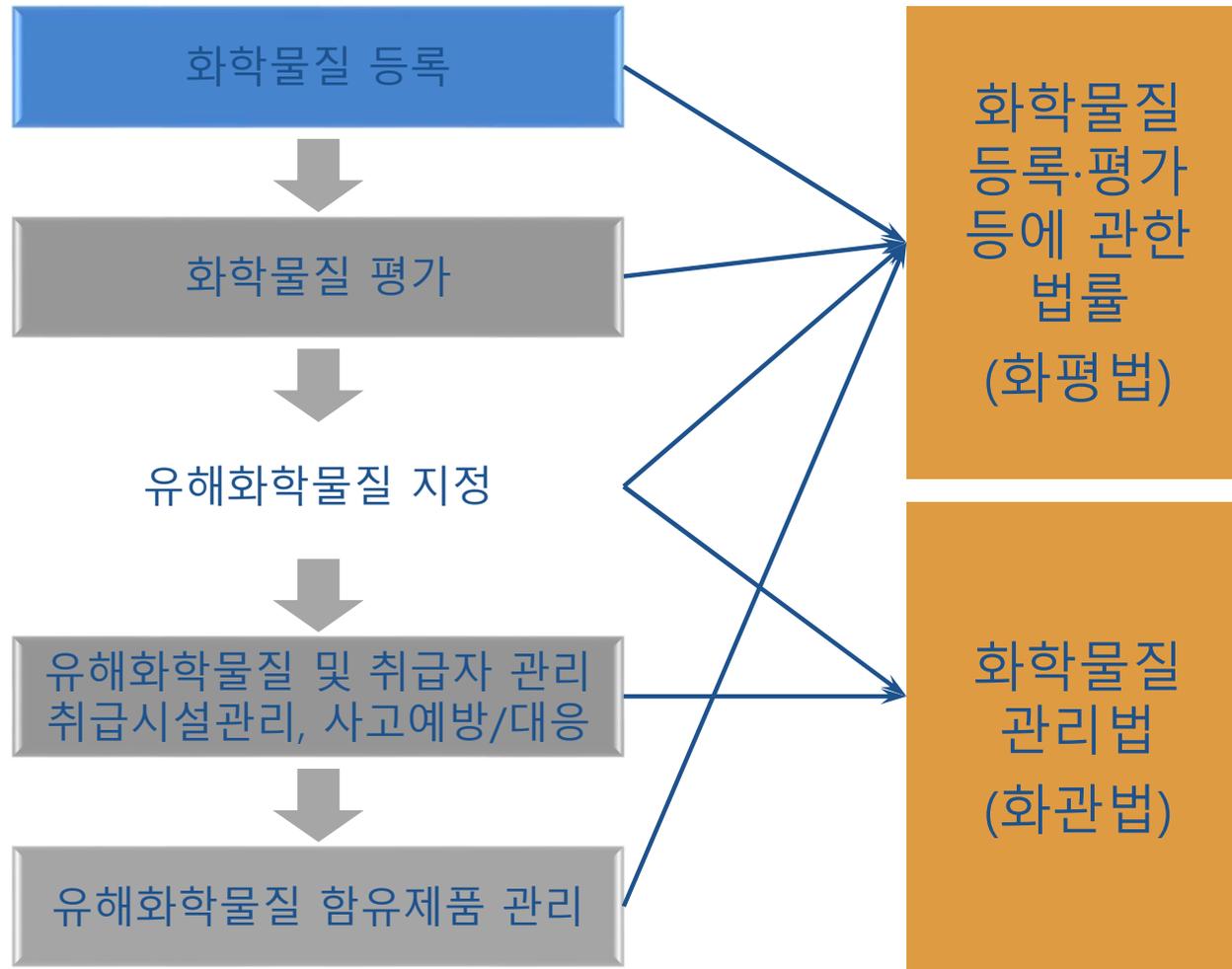


화학제품 관련 법령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거법령	관리품목
위해우려제품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세정제, 접착제, 탈취제, 코팅제, 방향제, 소독제 등 5개 유형 18종
공산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구, 섬유제품, 화장지 등 14개 유형 88종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전체 의약품
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제 등 17개 유형 46종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향수, 샴푸, 비누, 왁스 등 12개 유형 74종
위생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관리법	음식 세척제, 물티슈, 이쑤시개 등 3개 유형 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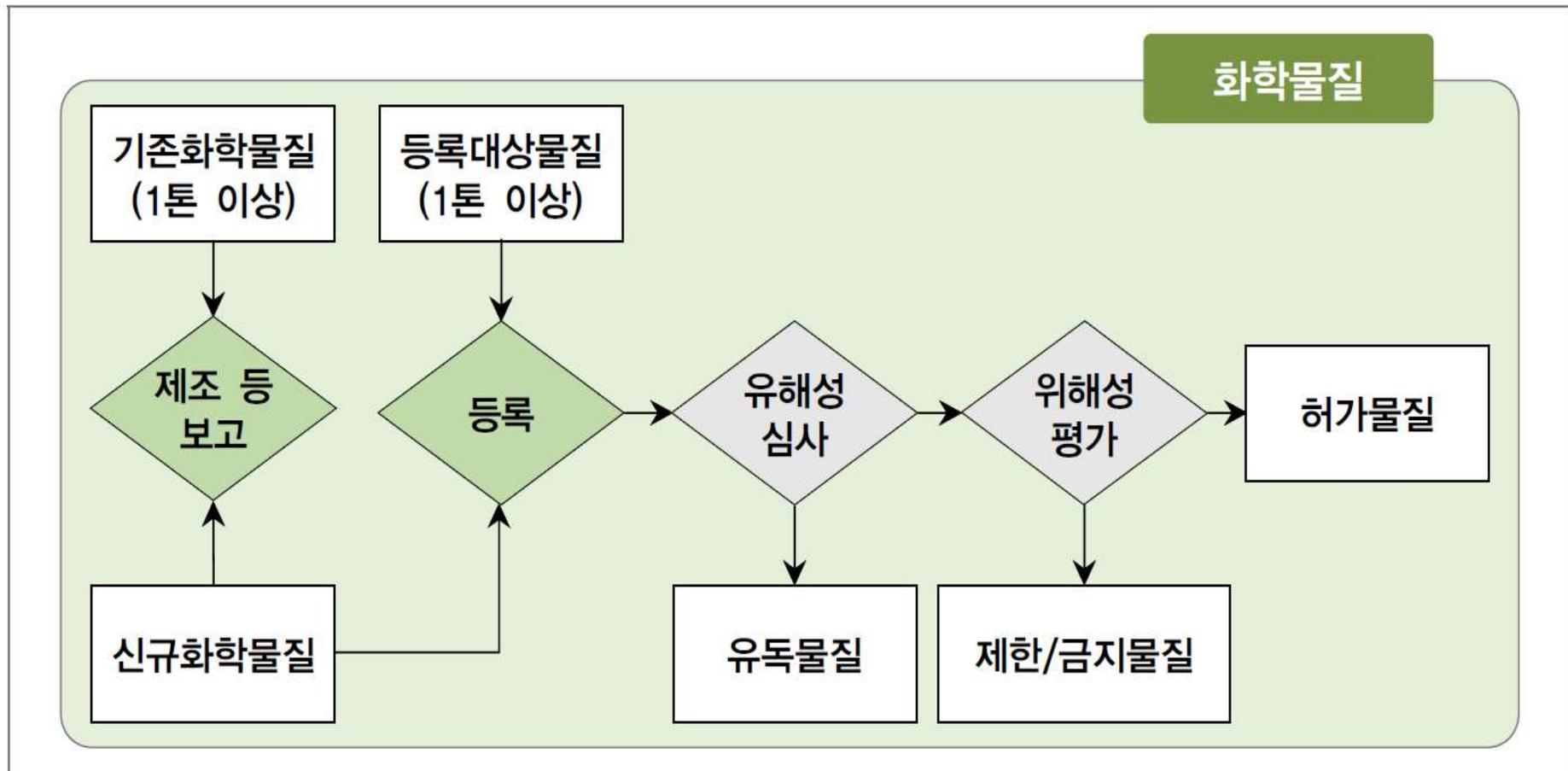


화평법과 화관법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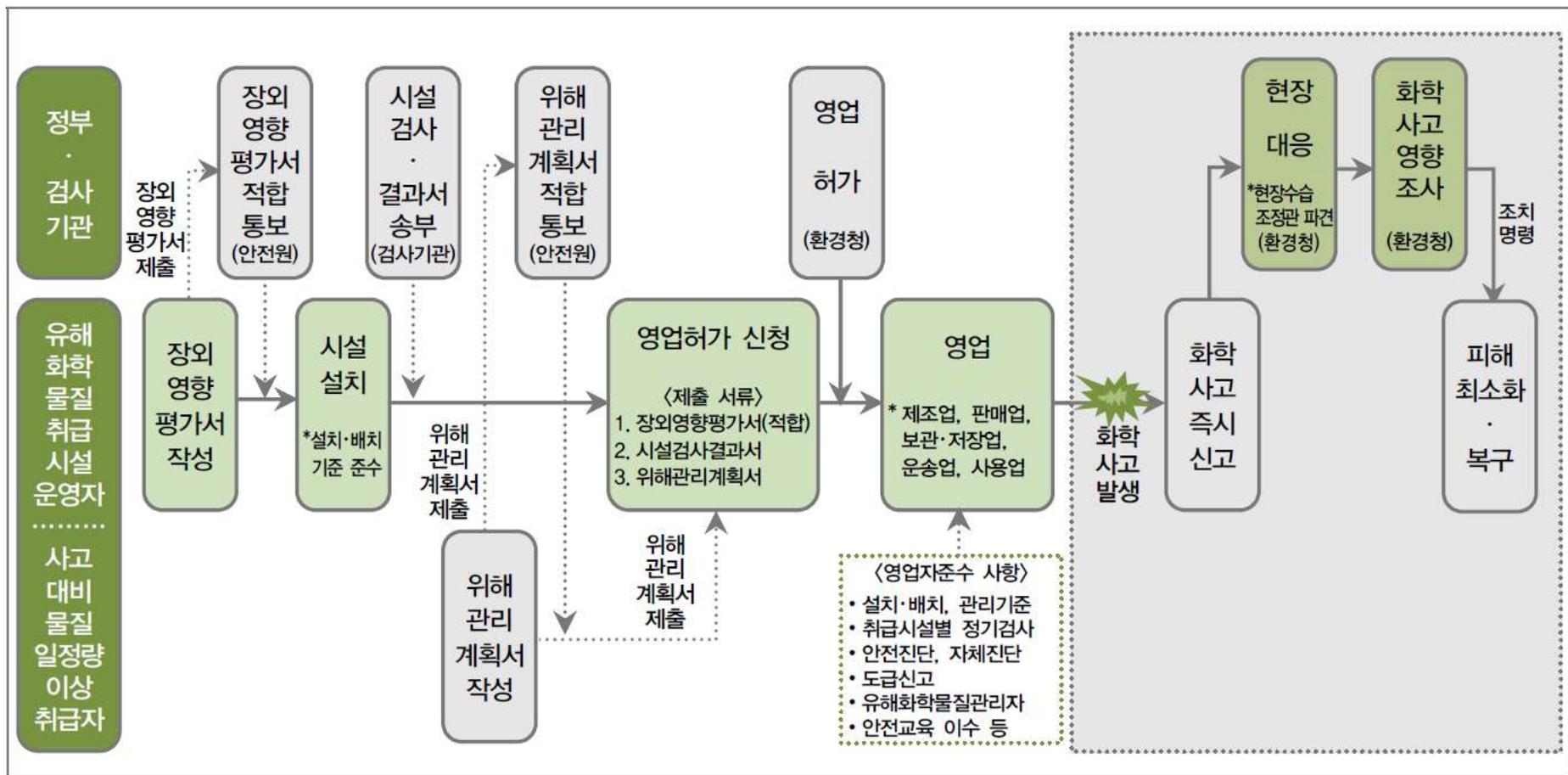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평가 체계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체계





Ⅲ.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관리법제



리스크 평가·관리의 구조

-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 리스크 정보의 수집
- 평가(Evaluation): 화학물질 리스크의 평가
- 허가(Authorisation): 고위험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 제한(Restriction): 수용불가능한 리스크를 초래하는 물질의 제조 등 제한



등록(Registration)

No data, No market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함(제10조 제1항)
-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음(제13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은 등록 없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3조 제2항)

* 개정법(2019. 1. 1. 시행)에서는 과징금 부과 가능



등록(Registration)

●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 기존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개정법(2019. 1. 1. 시행)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Registration)

● 등록을 위한 제출정보

-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록(Registration)

● 등록의 완료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Evaluation)

● 유해성심사

- 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 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급성경피독성·급성흡입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만성독성, 반복도출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평가(Evaluation)

● 위해성평가

-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허가(Authorisation)

● 허가물질의 지정

-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1.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3. 제1호 및 제2호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개정법(2019. 1. 1. 시행)

1~3.과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을 미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두고, 중점관리물질 중에서 허가물질을 지정하도록 함



허가(Authorisation)

●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 (화관법)

-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허가(Authorisation)

●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 (화관법)

-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한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한(Restriction)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한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 용도로의 제조·수입·판매 등 금지

금지물질: 모든 용도로의 제조·수입·판매 등 금지



제한(Restriction)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관리 (화관법)

-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 의의

● 사전배려원칙의 구체화

- 등록: 특정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아무런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한 단계, 즉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정보제출책임은 지우고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제조·수입 금지 단,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의 정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님
- 허가: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

● 원인자책임원칙의 구체화

- 등록: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 또는 환경 피해의 잠재적 원인자인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위해성 등의 정보제출책임을 부과함
- 허가: 허가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 또는 환경 피해의 잠재적 원인자인 사업자에게 안전성 등에 관한 추가정보를 제출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움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 한계

● 등록

-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그 국내 유통량이나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되어야만 등록대상이 됨
- 법령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현재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이 4만 종을 넘어서고 있음에 비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약 500여 종에 불과함
- 화학물질의 용도가 등록 당시와 달리 변경되더라도 변경등록의무만 부과될 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허가

- 허가물질 지정 및 허가 기준에 불특정 개념 다수 존재 → 행정청의 재량 확대
- 허가물질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으면, 허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음
- 현재 허가물질로 지정된 물질 없음



IV. 생활화학제품 리스크 평가·관리법제



화평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화학제품

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연간1톤이상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2.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품
위해성평가

위해우려제품
지정*

안전·표시기
준고시

안전·표시기준
자율확인

〈시장감시〉
(시장감시단 운영,
정기안전성조사,
제품사고조사 등)

판매중지,
회수 등
(위반제품)



● 현행법의 문제점과 한계

● **관리체계의 분산**

복수의 개별법령에 따라 여러 관계부처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관리대상의 한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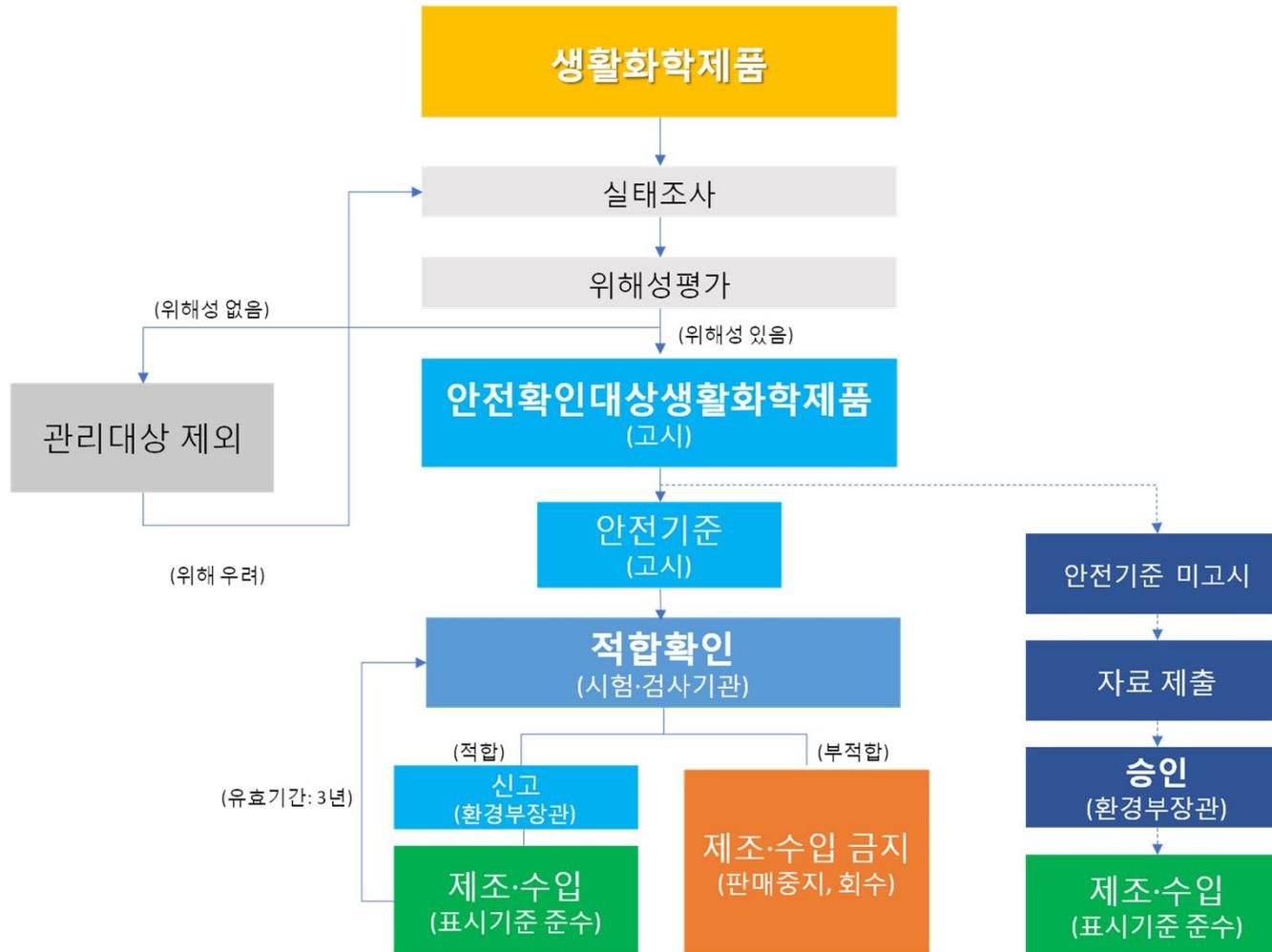
화평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는 화학제품은 모든 화학제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정됨
5개 유형, 18종만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음

● **사전적 관리수단의 부재**

판매 등의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위해성평가는 이미 유통 중인 화학물질 함유제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고시하는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사후적인 관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

살생물제관리법의 기본구조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리스크 평가·관리체계





살생물제관리법의 기본구조

살생물제의 개념

-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 살생물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물질	유해성
PHMG (구조식: $(C_7H_{15}N_3)_n \cdot xH_3O_4P$)	- (용도) 항균제 - (인체독성)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 손상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
OIT (구조식: $C_{11}N_{19}NOS$)	- (용도) 방부제, 방균제 - (인체독성) 피부부시성, 심한 눈 손상, 피부 과민성 등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



살생물제관리법의 기본구조

살생물제의 개념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i)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또는 (ii)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제품	기능	비고
 소독제	(주기능) 염소계 살균·소독제	살균제, 향료 등이 함유된 주방·욕실 소독제
 방부제	(주기능) 흰개미 등 퇴치(방충), 살균, 부패방지	프로피코나졸이 함유된 목재용 방부제



살생물제관리법의 기본구조

살생물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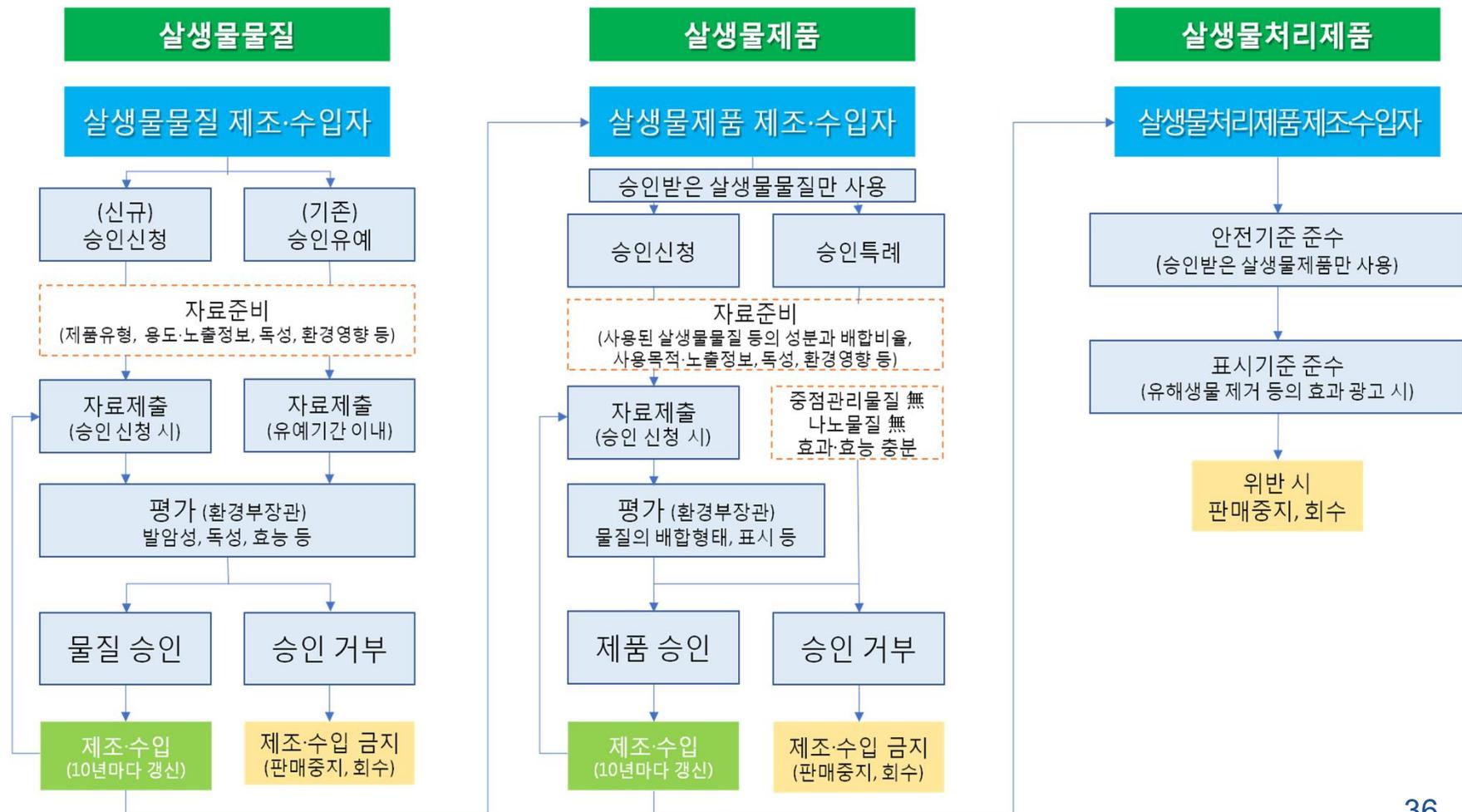
●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제품`	기능`	비고`
<p>항균기능성 의류</p>	<p>(주기능) 속옷으로 흡습, 보온을 통해 쾌적함을 유지 (부가기능) 땀냄새 등 체취 제거</p>	<p>섬유에 항균성분을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땀냄새 등 체취를 억제하는 기능</p>

살생물제관리법상의 리스크평가·관리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른 살생물제 리스크 평가·관리체계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 **사전배려원칙의 명문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사전 관리**

- 살생물제: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제도를 통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즉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음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제품 제조·수입 가능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 리스크 정보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명칭, 승인의 유효기간, 그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공개
- 살생물제처리제품: 제품 구매자가 제조·수입자를 상대로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 가능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음
- 소비자 또는 국민을 정보 제공의 객체로만 인식하고 쌍방향의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치 부재

● 사후관리

- 불법 제품의 판매 등 금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
- 제조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유해성, 위해성 정보 파악의 경우 수거·파기 등의 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위반사실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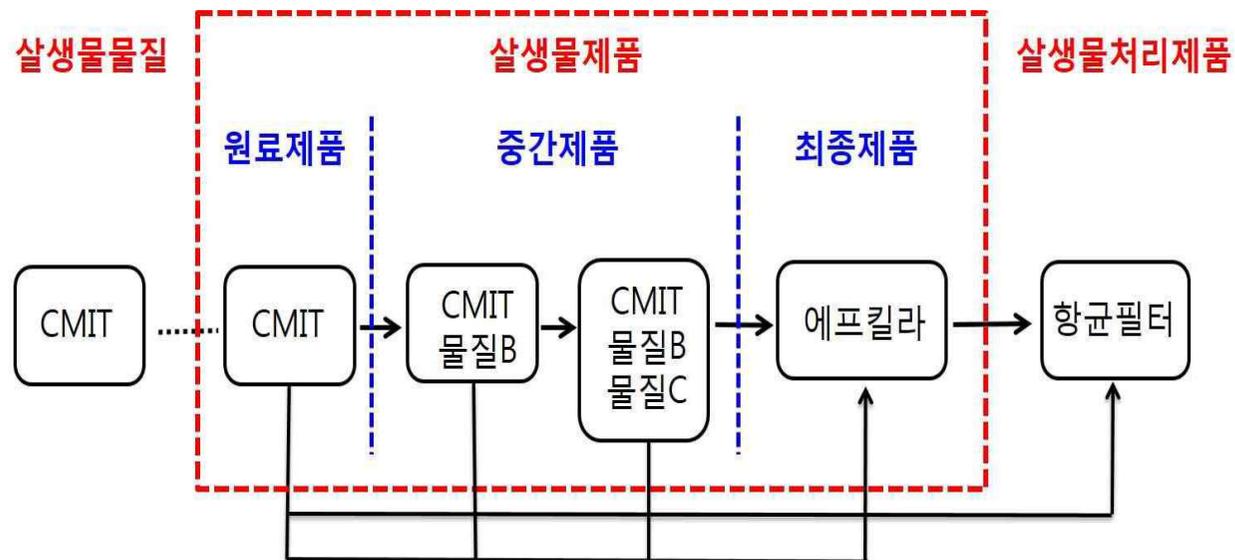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 적용범위의 제한성

-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군수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타 부처 소관 법령에서 인체 건강 및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를 적절히 고려하는가?

-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대상의 모호성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 기존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의 유예

-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에 관하여 최대 10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살생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최대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살생물물질 관리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바, 일률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물질의 사용용도나 노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독성이 높거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아예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살생물제품의 경우 그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모두 기존살생물물질이면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즉 최장 12년까지 제품승인 유예 가능 → 그 기간 동안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우려



감사합니다